

국회기록관리위원회 안건 분석을 통한 국회기록관리 정책 연구

A Study on National Assembly Archives Management Polic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mmittee of Korea

성면섭(Myeon-seob Seong)¹, 김장환(Janghwan Kim)²

E-mail: myeonseob@naver.com, skujjang@hanmail.net



¹ 제 1저자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기록실무원
² 교신저자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기록연구관

논문접수 2021-10-19
최초심사 2021-10-22
게재확정 2021-11-05

ORCID

Myeon-seob Seong
<https://orcid.org/0000-0001-8705-7162>
Janghwan Kim
<https://orcid.org/0000-0002-8292-6338>

© 한국기록관리학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초 록

국회의 기록관리 정책은 실행되기에 앞서 국회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 연구는 기록관리 정책 수립 및 추진의 기반으로 작용하는 위원회의 안건을 파악해, 국회의 각종 기록관리 정책이 전 분야를 다루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이에 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안건을 중심으로 전체 정책의 연속성 및 다양성, 특정 정책사항에 대한 편중성 여부, 정책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주요 논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전체 안건 확인 결과,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기록관리 정책 관련 안건은 보고안건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정책 관련 다양하고 깊은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기록관리 정책이 특정 부문에 치중되지 않고 다년간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National Assembly's archives management policy is deliberated by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mmittee before it is implemented. This study tried to identify the agenda of the committee, which acts as a basis for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the archives management policies, and confirm whether various policies dealt with all fields of archives management. Accordingly, the committee meeting data, minutes, and related laws were checked. Focusing on the agenda, the continuity and diversity of the overall policy, whether there is a bias toward specific policy issues, and the main discussion subject of the committee about the archives management policy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confirming the entire agenda, the agenda related to the archives management policy has been made up of reporting agendas, and as a result, it has emerged that various and in-depth discussions related to policies have not been conducted well.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the overall archives management policy was carried out with continuity for many years without focusing on a specific sector.

Keywords: 국회, 국회기록관리위원회, 국회기록보존소, 기록관리정책, 국회기록관리
National Assembly of Korea,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mmittee of Korea,
National Assembly Archives, archives management policy, archives manage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1. 머리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 기능,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국회에서 생산하는 기록물은 생산 단계의 직접적인 목적을 넘어서서 증거 가치와 정보 가치를 내재하고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설명책임성을 입증하는 귀중한 국가자산이다. 때문에 전문적으로 국회의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록관리기관은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이를 국민에게 서비스해야 할 책임을 가진다. 국회는 오래전부터 국회사무처를 중심으로 국회의회의록, 의안문서, 헌정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록관리 전통이 있었다. 1999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이 제정되면서 2000년 1월 1일 국회는 국회사무처에 국회기록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국회기록보존소를 설치하였다. 이와 동시에 「국회기록물관리규칙」, 「국회기록물관리규정」 등 관련 내부 법규를 제정하고, 행정부보다 먼저 기록물분류기준표를 만들어 각 처리과에 배포하는 등 제정된 법률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였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기록연구직렬을 신설하여 기록관리 전문가를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회기록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갔다(김장환, 2018, 43).

국회기록관리는 국회기록보존소 설립 이후 다양한 기록관리 정책 수립, 관련 법규정의 제정·개정, 기록연구직 증원, 기록관리시스템 및 전문장비 도입 등을 통해 오늘날에 이르렀다. 2021년 현재 국회기록보존소는 ‘국(局)’ 단위(1소 2과 5담당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공공기록물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 설치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국회도서관으로 명시되어 있다. 「국회도서관 직제」 제10조는 국회기록보존소의 직무를 ‘국회기록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기록물의 이관·보존·평가·열람 및 DB 구축’, ‘국회의원기록 및 구술기록 등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관리’ 등 12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도서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기록보존소의 각과는 국회의회의록, 국회 소속기관의 생산·접수 기록물, 시청각기록물, 행정박물 등 다양한 유형의 국회기록물에 대한 수집·이관·보존·평가·관리·서비스 등 기록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이를 볼 때 국회도서관 소속의 국회기록보존소가 실질적인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회의 기록관리 주요 정책은 실행되기에 앞서 국회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국회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5조를 근거로, 국회 소속기관 공무원 및 기록관리 분야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여 운영된다. 국회기록보존소 설치 때부터 국회사무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해당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국회기록보존소가 국회도서관 소속으로 이관된 이후 국회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는 국회도서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현행 「국회기록물관리규칙」 및 「국회기록물관리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① 국회기록관리 주요업무의 기본계획, ② 기록물 회수 및 보상, ③ 국회기록물의 비공개 기간연장, ④ 기록관리 현황평가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국회 내부에서는 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뒤 각종 기록관리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수립·추진된다.

그동안 기록관리학계의 공공기록물관리 영역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 기록관리에 관한 것들이고, 국회기록관리와 관련된 연구는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다. 그중 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선행연구는 더욱 적은데, 이승일(2008), 김유승(2011), 김유승과 김장환(2013)의 연구와 같이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의 일부 또는 국회기록보존소의 주요업무로서 간략히 소개되거나, 김장환(2015; 2018), 최혜영과 이승일(2019)의 연구와 같이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기록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 등 국회기록관리 강화 방안의 일부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잘 수행되어 왔는지, 위원회에서 누구에 의해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특정 부분에 치중된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는지, 국회기록관리 정책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되었는지, 어떠한 정책의 변화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국회 외부에 전혀 알려진 바 없다. 따라서 국회기록관리의 투명성과 거버넌스의 확보를 위해 관련 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시행되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자료 및 회의록, 관련 법규 내용을 분석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안건 현황 등 위원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하고, 정책 수립 및 추진의 기반으로 작용하는 위원회 안건을 파악해 각종 정책이 국회기록관리의 전 분야를 다루었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한편, 기록관리의 전 분야를 분석하기에 앞서 각 안건에 대한 범주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회도서관 직제」 제10조에 따른 국회기록보존소의 12개 직무 사항¹⁾에 근거하여 전체 안건을 ‘정책 기획’, ‘수집·분류’, ‘서비스 영역’ 등 업무의 순서에 따라 크게 3개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전체 정책의 연속성 및 다양성, 특정 정책사항에 대한 편중성 여부, 각 정책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주요 논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국회기록관리위원회 운영

2.1 국회기록관리위원회 구성

2001년 「국회기록물관리규칙」 및 「국회기록물관리규정」이 제정되면서 국회에 설치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국회사무처 국회기록보존소로 명문화되었다. 이와 동시에 위원회 관련 조항도 함께 신설되어, 「국회기록물관리규정」 제31조 및 제32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사무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회기록물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되었다.²⁾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라는 「국회기록물관리규정」 제32조 단서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기획조정실장, 의사국장, 국회도서관 총무과장(현 기획관리관), 국회기록보존소장 등 국회 내부의 고위공직자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필요할 경우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별도 위촉할 수 있다”라는 당시 「국회기록물관리규정」을 근거로 기록관리 분야 전문가 2인이 위촉되었다.

2009년 「국회사무처 직제」 개정(2009.4.27.)으로 인해 국회기록보존소가 국회도서관으로 이관되면서 위 법규의 내용도 일부 수정되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를 ‘국회도서관’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만 수정되었고, 전반적인 규정사항은 변하지 않았다. 위원의 구성만 다소 변경되었는데, 수석전문위원, 의사국장 등 국회사무처 소속의 위원 대부분이 국회기록관리위원회 위원에서 빠지게 되었다(<표 1> 참고).

1) 「국회도서관 직제」 제10조(국회기록보존소) ② 국회기록보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기록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국회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평가 및 지도·감독
3.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4. 국회기록물의 이관·보존·평가·열람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국회 관련 시청각기록물·행정박물 등 특수 유형 기록물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6. 국회의원기록 및 구술기록 등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7. 전자기록물의 이관·평가 및 장기보존 등에 관한 사항
8. 국회기록물 및 도서관자료의 복제·제본 및 마이크로폼화 등에 관한 사항
9. 국회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및 비공개기록물의 재분류에 관한 사항
10. 국회기록물 정리(整理)·기술(記述)·편찬 및 콘텐츠 개발·활용에 관한 사항
11. 도서관의 정보공개청구 등에 관한 사항
12. 기록정보 관리·서비스 시스템 등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 국회기록통합관리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국회사무처 시기 국회기록물관리위원회는 2002년, 2004년, 2010년 세 차례 운영된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남아있는 자료를 통해 조금이나마 당시 위원회 구성원, 안건 제목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표 1〉 국회기록물관리위원회 내부 위원 구성 변화

2002년			2004년			2010년			
위원장	국회사무차장		위원장	국회사무차장		위원장	국회도서관장		
위원	국회 사무처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기획조정실장, 법제실장, 의사국장, 총무과장, 국회기록보존소장	위원	국회 사무처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기획조정실장, 의사국장, 국회기록보존소장	위원	국회 사무처	기획조정실장, 법제실장	
		국회 도서관			총무과장			국회 도서관	기획관리관, 국회기록보존소장
		국회예산 정책처			-			국회예산 정책처	기획관리관
		국회입법 조사처			-			국회입법 조사처	기획관리관

2011년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이 전부 개정되면서 오늘날과 같이 위원회 명칭이 ‘국회기록관리위원회’로 변경되었고, 기존 위원회 관련 조항도 크게 변화하였다. 기존 ‘규정’ 수준에서 다루어진 위원회 조항이 상위 법규인 ‘규칙’ 수준에서 다루지게 되었고, 위원회의 기능 및 개최 시기, 위원 구성 등의 주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규칙의 개정과 함께 기존에 별도 인원으로 다뤄졌던 외부 전문가에 관한 사항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3인 이상 위촉”해야 한다는 등 의무 사항으로 명문화되었다.

위원회는 외부 위촉위원의 변경에 따라 1기~4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각 3명의 외부 전문가가 위촉되었다. 한국연구재단 연구자정보 시스템(<https://www.kri.go.kr/kri2>)을 통해 확인한 이들의 학문 분야는 각각 기록관리학, 문헌정보학, 역사학, 컴퓨터공학이었고(<표 2> 참고), 이들은 모두 기록관리 분야 관련 연구 실적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국회기록관리위원회 외부위원 구성

구분	1기	2기	3기	4기
기록관리학	1	-	1	1
문헌정보학	1	1	-	1
역사학	-	1	1	-
컴퓨터공학	1	1	1	1

2009년 「국회사무처 직제」 및 「국회도서관 직제」 개정과 2011년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의 전부개정은 위원회에 큰 영향을 주었다. 우선 기존 국회기록물관리위원회는 사무차장을 위원장으로 뒀으로써 국회기록보존소보다 상위 기관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국회 운영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큰 국회 상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당시 의결한 사항은 국회기록관리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들이 위원 구성에서 빠짐으로써 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상대적으로 힘을 잃게 되었다. 그리고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회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국회기록보존소장’에서 ‘국회도서관장’으로 변경되면서, 국회기록보존소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지위를 잃게 되었다.

현재의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가 최소 인원인 3명만 위촉되어 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법제실장, 각 소속기관 기획관리관, 국회 기록보존소장 등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내부위원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정된 인원으로 인해 많은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이는 과거의 내부위원 중심의 위원회를 답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2 국회기록관리위원회 안건 현황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5조제1항 각호는 ‘국회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제1호)’, ‘기록물의 회수 및 보상(제2호)’, ‘기록물의 비공개 기간연장(제3호)’ 등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원회는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진행한 기록관리 현황평가에 대해 심의하여야 한다.

2020년 서면심의를 포함한 위원회 정기회의의 전체 심의안건은 16건, 보고안건은 19건으로 확인되었다(<표 3> 참고). 이후 위원회 기능별 심의/보고 안건을 확인한 결과 제1호 13건(37.1%), 규정 제30조 13건(37.1%), 기타 5건(14.3%), 제3호 4건(11.4%) 순으로 현황이 나타났으며, 제2호 사항은 0건으로 확인되었다. 심의안건에 대한 의결 사항도 함께 확인하였는데, 총 16건 중 11건(68.7%)이 원안 의결되었고 4건(25.0%)이 수정 의결, 1건(6.3%)이 부결되었다.

<표 3> 국회기록관리위원회 심의/보고안건 현황

구분	회차	심의안건	위원회 기능	의결 사항
심의 안건	2011년 정기	- 국회의원 개인정보 공개기준(안)		수정 의결
	2012년 정기	- 2013년도 국회기록보존소 주요업무 계획(안)	제1호	원안 의결
		- 국회 소속기관 기록관리 현황평가 지표(안)	규정 제30조	원안 의결
	2013년 정기	- 2013년 국회 소속기관 기록관리 현황평가 결과 및 2014년도 지표(안)	규정 제30조	수정 의결
		- 국회의회의록 원본보존 및 보존매체 제작 방안	제1호	부결
	2014년 정기	- 2015년도 국회 소속기관 기록관리 평가 계획(안)	규정 제30조	원안 의결
	2015년 정기	- 2016년도 국회 소속기관 기록관리 현황평가 계획(안)	규정 제30조	수정 의결
		- 2004~2010년 생산 국회기록물 재분류(안)		원안 의결
	2016년 정기	- 2017년 국회 소속기관 기록관리 현황평가 계획(안)	규정 제30조	원안 의결
	2017년 정기	- 2018년도 국회 소속기관 기록관리 현황평가 계획(안)	규정 제30조	원안 의결
		- 생산연도 30년 경과 기록물의 비공개 기간연장에 관한 건	제3호	원안 의결
2018년 정기	- 생산연도 30년 경과 기록물의 비공개 기간연장에 관한 건	제1호	원안 의결	
	- 국회민원지원센터의 입법청원 문서의 서명부 관리 건	제3호	수정 의결	
2019년 정기	- 기록물의 비공개 기간 연장에 관한 건	제3호	원안 의결	
2020년 정기 (서면)	- 2020년도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결과에 따른 공개 여부		원안 의결	
	- 국회기록물 분류 점검사업 결과에 따른 공개 여부 및 비공개 기간연장	제3호	원안 의결	
보고 안건	2012년 정기	- 국회기록물 수집·관리 및 서비스 활성화 방안	제1호	X
	2013년 정기	-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안)	제1호	
	2014년 정기	- 2015년도 국회기록관리 주요업무 계획(안)	제1호	
		- 2014년도 국회 소속기관 기록관리 현황평가 결과	규정 제30조	
	2015년 정기	- 2016년도 기록관리 주요업무 계획(안)	제1호	
		- 2015년도 국회 소속기관 기록관리 현황평가 결과보고	규정 제30조	
	2016년 정기	- 2016년도 국회 소속기관 기록관리 현황평가 결과보고	규정 제30조	
		- 제19대 국회의원실 기록물 수집 결과보고		
	- 2017년도 국회기록보존소 주요업무 추진 계획(안)	제1호		

구분	회차	심의안건	위원회 기능	의결 사항
보고 안건	2017년 정기	- 2017년도 국회 소속기관 기록관리 현황평가 결과	규정 제30조	X
		- 2017년도 제2차 국회기록물공개심의회 결과		
		- 2018년도 국회기록보존소 주요업무 추진 계획(안)	제1호	
	2018년 정기	- 2018년도 국회 소속기관 기록관리 현황평가 결과 및 2019년도 계획(안)	규정 제30조	
		- 2019년도 국회기록보존소 주요업무 추진 계획(안)	제1호	
	2019년 정기	- 2019년도 국회 소속기관 기록관리 현황평가 결과 및 2020년도 계획(안)	규정 제30조	
		- 2020년도 국회기록보존소 주요업무 추진 계획(안)	제1호	
	2020년 정기 (서면)	- 2020년도 국회 소속기관 기록관리 현황평가 결과 및 2021년도 계획(안)	규정 제30조	
		- 국회 소속기관 회의록 생산·관리 방안	제1호	
		- 2021년도 국회기록보존소 주요업무 추진 계획(안)	제1호	

3. 위원회 안건 확인을 통한 국회기록관리 정책 분석

3.1 국회기록관리 업무 주제별 위원회 안건 재구성

다음으로 위원회 안건 분석을 통한 국회기록관리의 정책 변화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별 심의/보고안건을 확인한 뒤,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수행하는 국회기록관리 업무에 따라 각 안건을 그룹화하였다. 한편 ‘국회기록관리 주요업무 계획(안)’은 세부 사항별로 분리 후 각각을 독립된 사안으로 간주하였고, 동일한 제목 이면서 동시에 다음연도까지 연속되는 사항을 다루는 안건은 하나의 사안으로 다루어 그룹화하였다(<표 4> 참고).

<표 4> 국회기록관리위원회 안건 재구성

영역	세부사항	안건	비고
1. 정책 기획	1.1. 기록관리 정책 수립	- 국회기록물 수집·관리 및 서비스 활성화 방안	'12년(보고)
		- 국회기록보존소 조직 확대*	'13년(보고)
		- 신규·확대된 업무의 단계별 추진 계획*	'13년(보고)
	1.2. 법·제도 정비	- 국회 의정활동 관련기록물 관리를 위한 법체계 기반 마련*	'17년(보고)
		- 체계적인 의정활동 기록물 수집·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18년(보고)
		- 체계적인 국회기록관리를 위한 법제도 및 조직 기반 구축*	'19년(보고)
		- 체계적인 국회기록관리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및 내실화*	'20년(보고)
	1.3. 기록관리 지도·점검	- 국회 소속기관 기록관리 현황평가 지표(안)	'12년(심의)
		- 2013~2018년도 국회 소속기관 기록관리 현황평가 계획(안)*	'12, '14~'17년(심의); '13년(보고)
		- 국회 소속기관 기록관리 현황평가 내실화*	'15년(보고)
		- 2013년 국회 소속기관 기록관리 현황평가 결과 및 2014년 지표(안)	'13년(심의)
		- 2014~2017년도 국회 소속기관 기록관리 현황평가 결과	'14~'17(보고)
		- 2018~2020년도 국회 소속기관 기록관리 현황평가 결과 및 차년도 계획(안)	'18~'20년(보고)
		- 국회 소속기관 회의록 생산·관리 방안*	'20년(보고)
	1.4. 기록관리 교육	- 국회기록관리 교육 실시*	'13년(보고)
- 수요자 중심의 기록물 관리교육 확대*		'16년(보고)	
1.5. 대내외 교류협력	- ICA 서울총회 참가 및 국회도서관 홍보 강화*	'15년(보고)	
	- 글로벌 기록관리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교류협력 강화*	'16년(보고)	
	-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협의체 등 대내외 협력 강화*	'20년(보고)	

영역	세부사항	안전	비고	
2. 수집·보존	2.1. 수집·관리	- 시청각기록물 수집·관리 기반 구축*	'13~'14년(보고)	
		- 국회 시청각기록물관리시스템 운용*	'16년(보고)	
		- 한눈에 보는 의정활동 보도자료 수집·서비스*	'14년(보고)	
		-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낙선의원실 기록물 등 의정활동 기록물 수집·관리 기반 마련*	'15년(보고)	
		- 제19대 국회의원실 기록물 수집 결과보고	'16년(보고)	
		- 국회 의정활동기록물 수집·정리*	'16년(보고)	
		- 제20대 교체 의원실 기록물 등 의정활동 기록물 수집*	'19년(보고)	
	2.2. 구술기록 채록	- 국회의장단 구술 아카이브 구축 사업*	'12년(심의); '13~'15년(보고)	
		- 국회 역대 의장단 및 주요 인사 구술채록 사업*	'16~'17년(보고)	
	2.3. 역사기록 수집	-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사업 관련 기록물 조사·수집*	'17년(보고)	
	2.4. 평가 및 보존	- 기록물 이관·점검 및 보존매체 변환*	'13년(보고)	
		- 국회기록물 평가 및 폐기*	'15년(보고)	
		- 국회민원지원센터의 입법청원 문서의 서명부 관리 건	'17년(심의)	
		- 국회 소속기관 및 국회의원 기록물 디지털화 사업*	'18년(보고)	
		- 회의록 원문의 보존매체 제작 및 보존방법 수립*	'12년(심의)	
		- 국회회의록 원본보존 및 보존매체 제작 방안	'13년(심의)	
		- 탈산장비 도입을 통한 중요 국회기록물의 영구보존처리 기능 강화*	'15년(보고)	
		- 시청각기록물 전용 보존공간 설치*	'15년(보고)	
		- 기록물 서고 환경 개선*	'16년(보고)	
		- 국회기록물의 원본 보존성 강화 및 활용성 제고*	'18년(보고)	
	2.5. 시스템 관리	- 국회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 인수 및 검증 기능 개선*	'14년(보고)	
		- 국회기록통합관리시스템 개선*	'20년(보고)	
	3. 서비스	3.1. 공개 재분류	- 국회의원 개인정보 공개기준(안)	'11년(심의)
			- 국회기록물 공개여부 분류 사업*	'12년(심의); '13, '15년(보고)
			- 2004~2010년 생산 국회기록물 재분류(안)	'15년(심의)
- 2020년도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결과에 따른 공개 여부			'20년(심의)	
- 2017년도 제2차 국회기록물공개심의회 결과			'17년(보고)	
- 생산연도 30년 경과 기록물의 비공개 기간연장에 관한 건			'17~'18년(심의)	
- 기록물의 비공개 기간연장에 관한 건			'19년(심의)	
- 국회기록물 분류 점검사업 결과에 따른 공개 여부 및 비공개 기간연장		'20년(심의)		
3.2. 정리·기술		- 보존기록물 정리·기술 기반 조성*	'13년(보고)	
		- 국회 보존기록물 정리·기술 체계 기반 마련*	'15년(보고)	
		- 국회 보존기록물 분류·기술 추진*	'16년(보고)	
		- 국회조직 연혁관리 기반 조성*	'13년(보고)	
		- 국회조직 연혁정보 조사*	'17년(보고)	
3.3. 기록 정보콘텐츠		- 이용자 친화적 기록정보콘텐츠 개발·구축*	'14년(보고)	
		- 의정사와 함께하는 전시 및 발간 사업*	'14년(보고)	
		-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를 통한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15년(보고)	
		- 국회기록정보콘텐츠 개발·구축*	'15년(보고)	
		- '국회 주요기록물 소개' 콘텐츠 강화*	'17년(보고)	
		- 이용자 친화적 기록정보콘텐츠 내실화*	'18년(보고)	
3.4. 기록물 열람		-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 주요사업*	'18년(보고)	
		- 임시의정원 관련 업무의 정착화*	'19년(보고)	
		- 국회기록물의 공개 확대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	'20년(보고)	

* 다음연도 주요 업무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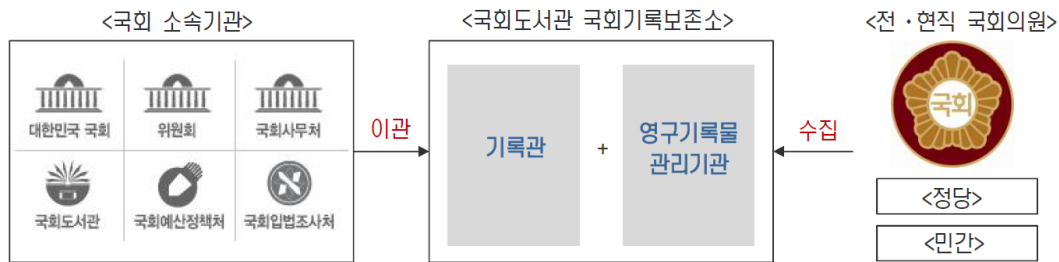
3.2 정책 기획

3.2.1 기록관리 정책 수립

국회사무처 소속 당시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회의록, 의안문서, 소속기관의 행정문서 등의 이관·관리 및 보존, 국회 헌정자료에 대한 수집·편찬, 국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업무 등을 수행했다. 그러나 2009년 국회도서관으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정보공개청구 업무 및 국회 헌정자료 관련 업무는 국회사무처에 잔류되고, 국회기록보존소에는 순수 공공기록관리 영역만 이관되었다(김장환, 2018, 48).

그러한 와중에 공공기록물법과 「국회기록물관리규칙」 등 기록관리 관련 법규의 전부개정이 진행되었다. 이에 2012년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기록물 수집·관리 및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기존 소속기관의 생산·접수 기록물부터 의정활동 기록물까지 수집·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체계화 및 보존·관리·서비스 방안을 계획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였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2b, 34-35). 이를 통해 수립된 ‘보존회의록 관리’,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기록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등 9개 주요 추진과제는 이후 실제 국회기록관리 정책으로 모두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13년 12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기록보존소 직제가 통과되면서, 조직이 과 단위(1과 3담당)에서 국 단위(1소 2과 5담당)로 격상되었고, 신규·확장되는 업무분장이 생겨났다. 기존 기록관리 업무에 시청각기록물·행정박물 등 특수 유형 기록물 및 국회의원 기록 및 구술기록 등 의정활동 기록물에 대한 수집·관리, 기록물 정리·기술 및 장기보존, 콘텐츠 개발·활용, 기록물 관리·서비스 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업무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국회 소속기관의 기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기록물의 이관·보존·평가·열람 및 DB 구축 등의 업무가 확장되었다. 국회 소속기관 전체에 대한 기록관 업무에 집중하던 국회기록보존소는 비로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과 더불어 수집형 기록관리기관의 역할까지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그림 1> 참고).



<그림 1> 국회기록관리 체제

* 출처: (김장환, 2016, 7)

3.2.2 법·제도 정비

2017년 위원회 보고안건으로 상정된 「국회 의정활동 관련기록물 관리를 위한 법체계 기반 마련 계획(안)」을 시작으로, 국회기록보존소는 의정활동 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관리를 위한 법률·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계획하였다. 그 일환으로 2018년에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였다. 전문가 집단과의 세미나·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법률(안) 제정에 대비한 「국회기록물관리규칙」 등 하위 법규의 전면개정 등을 함께 준비하였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7b, 26-27). 이 법률(안)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이 특별법 형태로 제정하여 현재 누락되어 있는 국회의원 기록물을 포함한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 전반을 법제화함으로써 국회기록보존소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회기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되지 못하였고, 다만 의정활동 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실무 절차를 규정하는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 수집·관리 내규」를 제정하고자 준비하였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2019년 국가기록원이 추진한 공공기록물법 개정사항 중 제46조의2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국회기록물관리규칙」 등의 개정도 추진하였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9b, 41-42). 이는 신설된 공공기록물법의 조항을 근거로 주요 정당의 정책 자료까지 수집범위를 넓히고자 한 것이다. 그동안 원내 정당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기록물 수집을 진행해왔으나, 법적 관리기관이 아니었기에 정책자료 수집 등에는 한계가 있었다. 구체적인 수집방안을 마련하기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기록물 수집범위가 중복되지 않도록 수집 대상을 검토하였고, 정책 자료의 경우 대부분 비공개 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기에 이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9a, 5-6).

한편, 2018년 2월 21일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조승래 의원이 국회사무총장에게 보존회의록 불개제 부분 복원에 대해 질의하면서, 비공개회의록 등에 관한 공표 방안이 다시금 논의되기 시작하였다.³⁾ 사실 이 문제는 과거 2004년⁴⁾과 2013년의 위원회에서도 논의되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었다. 2018년 2월 23일 국회도서관장이 비공개회의록 및 불개제 부분 공표에 관한 사안을 국회기록보존소와 의사국이 협조하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를 계기로 의사국과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2021년 현재 「국회기록물관리규칙」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⁵⁾

3.2.3 기록관리 지도·점검

2013년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 소속기관(국회 상임위원회 포함)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지도·점검(현황평가)을 추진하였다. 국회의 기록관리는 ‘처리과-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회기록보존소)’의 2단계 체제로 이루어짐에 따라 현황평가 역시 국회 각 소속기관의 106개 처리과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012년 처음 설계된 현황평가 지표는 각 소속기관 처리과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기록관리 업무를 단위로 하여 구성했으며, 평가에 따른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간소화하여 설계하였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2b, 12-32).

초기 현황평가는 수립된 평가지표를 활용해 각 처리과에서 기록관리 자체진단을 실시하고 관련 실적을 제출하면 이를 국회기록보존소에서 확인·점검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당시 처리과의 기록관리 인식 부족 문제, 현황평가 지표 관련 문제, 자체평가에 대한 신뢰도 제고 문제 등이 기록관리 현황평가의 시행 초기부터 대두되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서도 여러 논의가 펼쳐졌지만, 결과적으로 자체평가 신뢰도 부분은 우선 지표에서 배점을 낮추고, 나머지 현황평가 지표에 관한 사항은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3a, 3-9).

2014년에도 위와 같은 여러 문제가 다시 한 번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국회기록보존소는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현황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다음연도부터 기록관리 저변 확대를 위해 직접 처리과를 방문하여 평가지표와 기록관리 업무를 설명하고자 하였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4a, 5). 그 결과 2015년에는 컨설팅 형식의 ‘국회기록관리 맞춤형 지도·점검’이 추진되었다. 총 2차로 진행되는 맞춤

3) 이 질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의회의록시스템의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록 99쪽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10-050.do>).

4) 2004년 3월 11일 개최된 국회기록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안건 「회의록 불개제 부분 공개여부 결정의 건」이 상정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1일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회의록의 공표에 관한 규칙안」(의안번호 171016)이 발의되었다. 이 규칙안은 국회운영위원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으나, 당시 국회사무처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더욱이 진전되지는 못하였고, 결국 제17대가 끝남과 동시에 자동폐기되고 말았다(김장환, 2013, 100).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김장환(2013)의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 다만, 현재 조승수 의원이 비공개회의록 공개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의안번호 2100852)을 발의한 상태라 해당 의안의 처리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개정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H0D0H6Y2J2A1R8N0B6E1D0H6T9M9).

형 지도·점검은 국회기록보존소의 담당자가 평가대상 처리과를 직접 방문하여 기록관리 업무 전반을 확인하고, 이후 설문조사와 컨설팅을 진행해 평가 만족도를 측정하고 종합적인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방식이었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5b, 10, 27-36).

현황평가 결과는 기록관리 교육 및 다음연도 평가지표 개발의 근거로 활용된다. 이에 2016년부터 국회기록보존소는 현장평가(맞춤형 지도·점검)와 기존 서면평가를 병행하는 현황평가를 추진하였고, 이후 2017년부터 온라인 확인·점검 과정까지 추가하는 등 현황평가 방식을 점차 개선해나가고 있으며, 2021년 현재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록관리 현황평가는 <표 5>와 같이 4단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20b, 23-24).

<표 5> 기록관리 현황평가 각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서식에 따른 전체 처리과의 현황 평가(서면평가)	- 처리과 현황평가 취합 및 결과 분석 - 전자문서시스템의 기록물 생산 현황 확인·점검	- 평가 결과에 대한 각 처리과 의견 조희	- 맞춤형 지도·점검 실시

한편 국회기록보존소는 기록관리 현황평가를 진행하면서, 행정부와 같이 회의록 및 속기록 의무생산 회의의 지정·관리 및 회의록 등에 관한 집중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2020년도 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2021년에 이르러 「국회 소속기관 회의록 생산·관리 방안」 정책을 수립·추진하였다. 이처럼 현황평가를 통해 발견되는 문제점은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함과 동시에 새로운 정책으로 추진되어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며, 후속 조치로서 기록관리 현황평가의 지표로 설정해 실제 처리과에서 제대로 수행되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다년간 진행된 기록관리 현황평가는 시행 초기와 달리 어느 정도 평가 업무가 안착되었고, 처리과 직원들의 인식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기록관리 인식 확산 및 처리과 독려 방법으로서 ‘현황평가 결과로 도출된 우수사례 홍보’, ‘현황평가 단계에서의 인센티브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된 바 있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3a, 7-8; 2016a, 5-8; 2017a, 4; 2019a, 7-8).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 처리과 포상(국회도서관장 혹은 국회의장 명의)과 더불어 국회의장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진다면, 더욱이 많은 소속기관의 기록관리 현황평가에 관한 관심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3.2.4 국회기록관리 교육

“국회기록물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목적으로 현재 국회기록보존소는 여러 기록관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국회기록보존소 기록정책과, 2019a, 1). 우선 매년 상반기 인사이동 후 처리과의 기록관리 책임자 등 실무자를 대상으로 처리과 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과 프로그램 개설 협의를 통해 여러 교육과정(행정실무과정 및 신입실무자과정 교육의 기록관리 실무)을 신설하였고, 국회도서관 기획담당관실과 협의하여 국회 직원들의 기록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회기록관리 전문교육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국회기록보존소는 「수요자 중심 기록물관리 교육 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기록관리 교육의 대상을 소속 기관 직원에서 국회의원 보좌직원까지 확대하였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6b, 33). 사실 이전까지의 기록관리 교육은 국회 소속기관의 직원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는 의정활동 기록물의 수집 범위가 확대되면서 국회의원실에 대한 기록물 수집 및 컨설팅이 진행되었는데, 컨설팅 결과 입법 관련 보좌진들의 기록관리에 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함을 확인하였고, 이와 함께 보좌직원에 대한 기록관리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6b, 27-28). 이에 국회기록보존소는 매년 보좌진 협의회 등과 협의를 거친 뒤

신규 임용된 의원보좌직원(인턴 및 입법보좌직원 포함)을 대상으로 한 기록관리 교육을 진행하고자 계획을 세웠으나, 2017~2018년 이후 실제 보좌진 교육으로 연결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소속기관 대상 교육보다 보좌진 대상 교육이 구성이나 진행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2.5 대내외 교류·협력

국회기록보존소는 2012년 ICA(국제기록관리협의회)에 기관회원(회원 구분 C)으로 가입하여, ICA 집행이사회 정기 총회뿐만 아니라 ICA/SPP(의회 및 정당기록 전문분과) 회의, EASICA(동아시아 기록관리협의회) 등 여러 국제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2016년 9월 5일~10일 ICA 서울총회가 개최됨에 따라 국회기록보존소는 국가기록원에 참가 의사를 밝히고, 국회도서관 기획담당관실과의 협의를 통해 국회의사당과 헌정기념관을 포함한 참관 프로그램, 소장 기록물을 활용한 국회도서관 홍보부스 설치 등을 추진·운영하였다. 이와 함께 논문 발표자를 선정하여 국회 기록화 전략, 국회 라키비움 등의 주제로 학술세미나에 참여하였다.

국내 교류·협력의 경우,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행정부의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국회도서관장(국회기록보존소장 대리 참석)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2019년 공공기록물법이 개정되면서 제9조제4항이 신설되었고, 이를 근거로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과 국가기록원은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2020년부터 대표자 회의, 실무자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국회도서관장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회기록보존소장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 역할을 하고 있음이 대외협력 부분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3.3 수집·보존

3.3.1 수집·관리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시청각기록물은 국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도서관(국회기록보존소)으로 이관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시청각기록물은 국회기록보존소의 시청각 전용 서고가 부재한 관계로, 이관되지 않고 국회방송국 등 각 처리과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국회기록보존소는 2014년과 2015년에 「시청각기록물 수집·관리 기반 구축」 정책을 수립하고, 국회 소속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해 생산·접수한 시청각기록물(영상회의록 및 각종 사진·동영상 등)의 보유·생산 현황을 조사하였다. 동시에 생산부서와의 이관 협의를 진행하고 시청각기록물 보존서고 공간을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시청각기록물 관리를 추진하였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3b, 10; 2014b, 5).

국회기록보존소는 2014년 「시청각기록물 수집·관리 기반 구축」 정책 수립 시기부터 관련 시스템 개발을 지속적으로 계획해왔다. 2016년에 이르러 국회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하면서 시청각기록물관리 기능을 개선하였고, 국회사무처 미디어담당관실, 방송국 기획편성과 등 국회 내 주요 시청각기록물 생산 부서를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6b, 36). 이를 통해 영상회의록시스템 등의 시청각기록물을 시범적으로 이관 받음으로써, 향후 대용량 시청각기록물을 원활히 이관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기록물도 국회기록보존소 직제 개편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의원기록은 법적 ‘이관’ 대상이 아니다.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은 과거 국회기록보존소가 국회사무처 소속일 때부터 ‘헌정자료’라는 명목으로 기증·구매 방법으로 수집·관리되고 있었다(김장환, 2018, 50).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정자료에 대한 관리 업무는 국회사무처에 잔류하였고, 이에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사무처의 헌정자료 관리와 별개로 국회도서관 차원의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에 대한 수집·관리 정책을 수립하였다.

초기 국회도서관의 의정활동 기록물 수집은 국회의장단의 구술채록 과정 중 이루어지는 기록물 기증, 「한눈에 보는 의정활동 보도자료 수집·서비스」를 통한 보도자료 수집⁶⁾, 국회의장의 서한을 통한 기증(이관) 요청 등 소극적 수준으로만 이루어졌다. 하지만 2016년부터 「제19대 국회 의원기록물 수집 계획」⁷⁾을 수립하고 국회의장 결재를 받는 등 국회기록보존소 차원의 의정활동 기록물에 대한 적극적인 수집·관리 정책이 추진되었다. 국회기록보존소는 2016년 5월 회기가 종료되면서 변동이 생긴 국회의원실 146곳에 방문하여 보좌진에게 기록물 기증에 관해 설명하고, 기증 의사를 밝힌 의원실과 협약을 맺은 후 기록물을 수집하였다. 하지만 의원기록물은 법적인 이관 대상이 아니었기에 대상 국회의원실 146곳 중 20곳의 의원실(11.9%)에서만 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었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6b, 25-27). 수집과 함께 의원실 컨설팅도 함께 수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입법 관련 보좌진들의 기록관리 관심과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의원기록물 수집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국회의원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기록관리 교육 및 컨설팅 필요 등의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제20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과의 협의를 통해 국회의원 사무실에 생산되는 문서가 국회전자문서 시스템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하였고, 국회기록물분류기준표를 정비하여 의원실 고유의 기록물철이 등록될 수 있도록 정비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회의원 기록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의원실에 배포하고, 국회의원실 및 원내 주요 정당에 대한 기록관리 컨설팅과 기록물 수집을 병행하고 있다.

이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에도 국회기록보존소는 「제20대 교체 의원실 기록물 등 의정활동 기록물 수집」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이 정책은 교체 의원실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지 않고 주요 정당의 선거전략 및 대응 관련 선거기록도 수집하고자 하였으며, ‘국회의원실·정당-국회기록보존소’ 간 기록물 수집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9b, 45-46). 이 정책은 시범적으로 실시된 「제19대 국회 의원 기록물 수집 계획」보다 체계화된 수집·관리를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사실 국회의원 기록관리는 관련 법률 제정·개정을 통해 법적 이관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회의원 기록물을 법적 대상으로 규정하는 「국회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은 현재 담보 상태에 있다.

3.3.2 구술기록 채록

국회의장단은 대한민국 국회의 최고 지도부로서, 국회의장단의 충원 과정과 법적·실제적 권한, 기능과 역할의 변화는 국회의 역사적 변천과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척도이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4b, 7). 하지만 국회기록보존소에서 보존·관리되는 문서류 위주의 기록물은 이러한 국회의장단의 역할을 명확하게 밝히고 규정하기 어렵다. 이에 국회기록보존소는 2012년 김형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 「국회의장단 구술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국회의장단의 의정활동을 구술 기록으로 생산하여 축적해오고 있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구술자의 연령, 그들의 기억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기록보존소는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선별하고, 구술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작성한 뒤 면담을 통해 문서류 등의 기록물에 남지 않은 뒷이야기까지 끌어내고자 하였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2a, 3-5). 사업 초기에는 역대 국회의장단만을 대상으로 구술채록이 진행되었지만, 2017년부터는 국회 중요 인사 및 의정사 중심의 주요 인사로 구술자 대상을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⁸⁾

6) 현재는 국회도서관 공공정책과에서 국회의원실 보도자료를 수집·서비스하고 있다.

7) 본래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낙선의원실 기록물 등 의정활동 기록물 수집·관리 기반 마련」이라는 제목의 보고 안건으로 2015년 정기회의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낙선의원’ 용어에 대한 수정의견이 제기되면서, 이 수집 계획의 제목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5a, 4-5).

8) 2020년까지 국회의장단 및 주요 인사 총 43인(258.5시간)에 대한 구술기록이 채록되었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20c, 2-5, 10).

구술기록 채록 사업은 유형화된 기록물로도 확인하기 힘든 국회의장단 및 주요 인사의 의정활동 관련 내용을 담아내, 국내 정치사 및 의정사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현재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를 통해 구술영상과 DB화된 국회기록물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접근점을 통한 기록물 제공이라는 의미에서 기록정보서비스 영역 측면의 의의도 함께 가지고 있다.

3.3.3 역사기록 수집

2017년 국회기록보존소는 2019년 4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임시의정원 기념사업 준비 T/F를 구성하고,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사업 관련 기록물 조사·수집」 계획을 구상하였다. 2017년 12월 15일부터 국회도서관, 독립기념관, 광복회, 국가기록원 등 23개 국내 기관을 대상으로 설정하여 조사 목록을 작성하고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수집 활동을 수행하였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7b, 28-29). 동시에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집 대상으로 선정된 국외 기관(미국 국립기록관리청, 하와이 주립 아카이브,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대만 중국국민당 문화전파위원회 당사관 등 9개 기관)에서 온라인 사본 수집과 함께 국회기록보존소 직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수집을 진행하였다.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사업 관련 기록물 조사·수집」의 결과로 국회기록보존소는 2,642건의 임시의정원 기록물을 수집하였다(국회기록보존소 기록정책과, 2019b, 4). 이후 기록물 해제 작업 및 아카이빙 구축 작업을 추진하고, 자료집 발간 및 콘텐츠 제작을 진행하였다. 임시의정원 사업은 공공기록물 위주로 기록물을 관리하던 국회기록보존소가 모(母) 기관의 정체성 확립의 측면에서 역사기록물까지 그 수집 범위를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즉, 공공기록물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기록물과 같은 의정활동기록물, 그리고 국회 개원 이전의 역사기록물까지 그 수집범위와 아카이브 역할이 확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3.4 평가·보존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기록물관리규칙」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과로부터 생산·접수된 기록물을 이관 받아 점검·정리하고, 보존기간 30년 이하의 한시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을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하고 있다. 프로세스상 행정부의 평가 업무와 큰 차별점은 없으나 보존기간 30년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평가심의회에 해당하는 국회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준영구 이상 이관 기록물과 수집된 의정활동 기록물은 원본의 보존성 강화를 위해 마이크로필름 제작, 디지털화, 탈산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전자기록물은 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2021년 현재 디지털운영담당관실)로부터 일괄 이관 받고 있으며, 보존기간 10년 이상의 전자기록물은 문서보존포맷 및 장기보존포맷으로 변환하여 관리하고 있다.

2012년 국회기록보존소는 보고안건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안)’의 일환으로 「회의록 원문의 보존매체 제작 및 보존방안 수립」 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부터 국회회의록에 대한 DB구축 등을 추진하고자 하였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2b, 35). 당시 국회사무처 의정기록과에서도 배부회의록으로 ‘국회회의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었지만, 회의록 원본은 DB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위원회 논의를 통해 이 계획안은 중복되는 부분은 별도로 작업하지 않고, 국회사무처의 배부회의록에 없는 불게재 부분 등만 스캐닝하여 작업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2a, 5-6). 그러나 국회회의록은 「국회법」 제118조와 「국회회의록 발간 보존 등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받게 되어 있고, 이들 법규정에는 비공개회의록 및 불게재 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사무처 의정기록과에 관련 법규정비를 건의하였지만, 이는 추진되지 못하였고 결국 국회회의록 원본의 관리 주체인 국회기록보존소는 「회의록 원문의 보존매체 제작 및 보존방안 수립」 계획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2013년 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국회기록보존소는 심의안건 「국회회의록 원본 보존 및 보존매체 제작 방안」

을 다시금 상정하고, 이를 위원회로부터 의결 받아 국회회의록 원본에 대한 탈산 처리, 이중보존 매체 제작 등 여러 보존처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3b, 46-55).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회회의록은 타 법규를 우선 적용하기에, 원론적으로는 관련 법규의 개정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이 심의안을 부결시켰지만, 국회기록보존소가 주체가 되어 규칙을 제정하는 것을 권고하였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3a, 9-11).

2015년 국회기록보존소는 총 629권의 국회회의록(제헌~12대)과 상임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한 탈산 처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탈산 처리는 탈산 용액을 기록물에 직접 분사하는 북키퍼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그 효과가 미미하여 다음 해에는 탈산 효과가 높은 용액침전 방식의 장비 도입을 추진하였다. 이후 장비 설치와 시범 운용을 거친 후 보존회의록 등 중요기록물의 상태를 모두 점검하였고, 수소이온농도(pH) 6.5 이하인 보존회의록을 대상으로 탈산 처리와 기록물 먼지 제거 및 포갑 등을 실시하였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5b, 17-18).

보존기록물은 소독작업을 거친 후 항온·항습기가 설치된 보존서고에서 관리 중이다. 보존서고에는 국회기록관리통합시스템과 연계된 RFID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중요기록물의 유출·도난 방지와 함께 효율적인 기록물 점검도 가능한 상황이다. 시청각기록물의 경우, 전용 서고를 구성하였고, 국회방송국, 국가기록원 등의 자문을 거쳐 재생·관리용 전문장비를 구매해 기록물의 상태파악 및 정수점검도 할 수 있게 되었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8b, 43).

한편, 2019년 국회 내부지침인 「선물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지침」이 국회의장실(당시 문화상 국회의장) 주도로 개정되었다(2019.09.10.). 이에 국회의장의 공식 활동을 통해 받은 선물류를 국회기록보존소가 관리하게 되어,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사무처 관리국 등 관련 처리과로부터 전·현직 국회의장의 선물 약 630점을 이관 받았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20b, 80). 이후 2021년 「국회의장 선물 관리 및 공간 확보」 방안을 수립하여, 시스템의 등록요소를 정비하고 국회의장 선물용 전용서고 공간을 마련하는 등 이관된 국회의장 선물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자 했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20b, 78-79).

사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회의장(단) 기록물과 같은 헌정자료의 관리 소관은 국회기록보존소가 아닌 국회사무처이다. 그렇지만 국회기록보존소가 「국회의장단 구술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통해 국회의장단의 구술기록을 채록함과 동시에 기록물을 기증받아 관리하고 있었으며, 국회의원실 기록물 및 정당기록물 등 의정활동 기록물에 대한 수집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의정활동 기록물 수집의 결과,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사무처로부터 국회의장단의 기록물 관리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국회의장 선물류의 이관·관리 역시 이러한 주도권 확보의 결과로 보인다.

3.3.5 시스템 관리

2009년부터 국회기록보존소는 국가기록원에서 개발한 표준 RMS에 일부 보존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하여 국회기록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었다. 국회전자문서시스템 및 국회 e-의안시스템 등 생산 시스템과의 연계인수, RFID를 이용한 서고관리, 수집/민간기록 등록, EDMS 엔진을 통한 기록물 원문 프로세스 개선 등 영구기록물관리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김장환, 이은별, 2015, 110). 하지만 이 시스템을 활용해 수집/채록된 의정활동 기록물 및 국회의장단 구술기록, 국회영상회의록과 같은 시청각기록물, 행정박물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제대로 입수·관리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특히 기본 베이스로 사용된 표준 RMS는 기록관 단계의 업무 기능 위주로 설계되어 있기에 국회기록보존소의 영구기록물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기록보존소는 우선 2014년 12월 「국회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 인수 및 검증기능 개선」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기존 시스템의 기록물 이관 및 검증 관련 기능을 고도화하고자 하였다. 이와 동시에 확보한 시스템 개발 예산을 활용해 2015년 기록관리시스템 중장기 발전방향(ISP)을 수립하였으며, 2016년부터 시스템 고도화가 추진되었다. 하지만 2019년 예산 삭감에 따라 국회기록통합관리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이 중단되

었다(<표 6> 참고)(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20b, 81-82).

<표 6> 국회기록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사항

연도	주요 내용
2016년	- 수집기록물, 시청각 및 구술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리 기능 개선
2017년	- 정리기술 기능 개발, 기록물 평가폐기, 포맷변환, 기록관리 편의 기능 등 개선
2018년	- 기록물분류기준표관리, 생산/수집 서고관리/열람 기능 추가, 기타 관리 기능 등 개선
2019~2020년	- 예산 삭감에 따른 고도화 사업 중단

국회기록보존소에서 ARMS 형식(RMS+AMS)의 통합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지속적인 고도화를 추진하였지만, 예산 삭감 등 내부 문제로 인한 고도화 사업이 중단된 상황은 아쉬운 점이다. 한편 2021년 다시금 국회기록통합관리시스템의 개선이 추진되었다. 이 시스템 개선 계획안은 서비스시스템 개발과 동시에 추진되는 것으로, 국회의장 선물 및 조직연혁정보 관리 기능을 신규 개발하고 기록유형별 서가 배치 및 RFID 발행 등 기록물 보존·검색 관리 기능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 2017년 위원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 기록물 등 관련 시스템은 여전히 구축되지 않았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7a, 5). 새로운 관리 기능의 개발 및 기존 기능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비밀기록물이나 데이터세트, 웹 기록물 등에 관한 관리 시스템도 반드시 구축해 이를 관리해야 할 것이다.

3.4 서비스

3.4.1 공개 재분류

국회기록보존소의 관리 대상 기록물 중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지난 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비공개 기록물의 경우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고 있다. 이에 국회기록보존소는 이러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국회기록물 공개 여부 분류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수행된 이 사업은 연간 약 12만 건의 대상 기록물을 선정하고(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2b, 5), 기록물의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최근 생산된 기록물부터 역순으로 분류하기 시작하여⁹⁾ 2019년에 완료하였다. 한편 2004년 전자문서시스템 도입 이전에 생산·접수된 국회 소속기관의 기록물의 경우 공개 구분이 모두 ‘공개’로 설정되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당시 기록물에 대한 공개값 분류를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비공개기록물에 대한 5년 주기 재분류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기록물 공개 재분류를 통해 심의할 사항은 국회기록물공개심의회를 거쳐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최종 의결된다. 국회기록보존소에서는 거의 10년에 걸쳐 기록물 공개 재분류를 추진해오면서 국회기록물에 대한 서비스 인프라를 비로소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3.4.2 정리·기술

공공기록물법 제38조의2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보존기록물에 대한 정리·기술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국회기록보존소 역시 국회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기에 이에 대한 업무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나, 그동안 보존·관리 측면의 업무만을 수행하였기에 정리·기술 업무에 대한 인력이나 기반이 부족했다. 이에 국회기록보존소는 여러 계획(안)을 수립해 보존기록물에 대한 정리·기술 업무 및 국회 조직의 연혁 정보(선거레코드) 관리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3b, 7, 11).

9) 한편 2015년도까지는 2004년 8월~1991년 생산·접수된 기록물을 대상으로서 역순으로 분류를 진행했으나, 2016년도 사업부터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제한기록물 등 생산연도가 오래된 기록물(제한~1990년)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정리·기술 업무를 위해 국회기록보존소는 ICA의 국제기록물기술표준 「ISAD(G): General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Description」, 국가기록원의 「영구기록물 기술 규칙(NAK 13:2011(v2.0))」 등 국내외 표준·지침을 참조하여 보존기록물에 대한 기술요소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2018년도에 국회도서관의 준영구 이상 기록물을 대상으로 추진한 ‘국회 보존기록물 정리·기술 1차 시범사업’ 사례를 토대로 「국회 보존기록물 정리 기술 지침(안)」을 작성하였다. 이후 정식 정리·기술 사업을 추진해, 보존기록물의 군·계열 분류 및 기록물철 배정, 기술서 작성, 국회기록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등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등에 따른 실·국 및 처리과 단위의 전거레코드를 함께 조사하고 있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7b, 32-33).

현재의 정리·기술 업무는 국회 소속기관의 생산·접수 기록물을 대상으로 우선 진행되고 있다. 수집된 의정활동 기록물은 편철 단계까지만 진행된 상태이며, 상위 계층에 대한 정리·기술은 미진한 상태이다. 의정활동 기록물에 대한 정리·기술 역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리·기술 및 연혁 정보 조사·정비 과정은 단순히 보존기록물의 관리 측면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카탈로그(catalog), 조사·연구 가이드(research guide) 등으로 구축되어 국회기록물에 대한 이용자의 다양한 접근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리·기술과 관련하여 후발주자에 속하지만, 전통적인 기술 방법론에 치우쳐 있어 유관기관인 서울기록원과 같이 유연한 분류체계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정리·기술 결과물을 외부에 서비스할 때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3.4.3 기록정보콘텐츠

「국회기록물 수집·관리 및 서비스 활성화 방안」 수립 이전까지 국회기록보존소는 보존·관리 위주의 업무를 주로 수행해왔다. 이후 「이용자 친화적 기록정보 콘텐츠 개발·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정치학 및 현대사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이용자 관심도 등을 반영한 대상 주제를 선정, 기록물 소재 정보를 조사하는 등 기록정보콘텐츠 구축을 추진하였다. 이와 동시에 「의정사와 함께하는 전시 및 발간 사업」을 계획해 기획전시 및 상설전시를 추진하고자 했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4b, 2-3; 2015c).

한편, 2014년의 위원회에서는 국회기록보존소가 콘텐츠 등을 활용한 기록정보서비스 홍보보다 미수집된 기록물 발굴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축적된 기록을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을 먼저 수집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대해 국회기록보존소는 같은 해 11월 시범사업으로 구축한 ‘양민학살사건’을 예시로 들며 위 의견에 대한 사항을 이미 반영하고 있음을 어필하였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4a, 2-5).

2016년부터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온라인서비스가 시작되었다. 홈페이지를 통해 기록정보콘텐츠(국회의장단 구술기록, 국회사 연표, 기록으로 보는 특별위원회, 사이버 전시관 등), 소속기관 공개기록물 중 일반문서에 대한 목록 및 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2018년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수집된 임시의정원 기록물을 활용해 해제집, 목록집 등 관련 자료집을 발간하고, 국회도서관 1층에 ‘홍진 의장 기념 전시실’도 리모델링하여 재개장하였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8a, 37-39). 또한 가상(VR)전시,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의 연표 데이터를 오픈소스 솔루션을 활용하여 마이그레이션하고 내용을 보강한 연표, 카탈로그 등의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임시의정원 디지털아카이브’를 구축·서비스하고 있다.¹⁰⁾

이후 국회기록보존소는 2019년 「이용자 친화적 기록정보콘텐츠 내실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국회기록보존소는 중장기적으로 기존 홈페이지를 임시의정원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과 통합하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HTML 기반 원문 뷰어를 탑재해 별도의 제한 없이 기록물 원문을 웹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콘텐츠에 활용된

10) 국회기록보존소는 해외 소재 기록물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조사 연구·수집, 미국 국립기록관리청(NARA) 수집기록물에 대한 해제집 발간 등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임기제 T/O를 확보하고, 임시의정원 기록물 조사·수집·발굴 등의 업무를 국회기록보존소 기본 단위업무로 정착시켰다(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9b, 43-44).

각 기록객체에는 고유 URL을 부여하여 사용자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홍연주, 2019, 134).

3.4.4 기록물 열람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그동안 국회기록보존소는 기록물에 대한 분류 점검과 비공개 기록물에 대한 재분류 등을 진행해 공개기록물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공개기록물로 구분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기록물 제공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 2020년 상반기까지 국회기록물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방식은 정보공개청구밖에 없었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기록물 제공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록관리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민원 성격의 행정적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한계가 있다(성면섭, 이해영, 2020, 120). 이에 국회기록보존소는 정보공개청구와는 별도로 2020년 9월부터 국회기록보존소에서는 개정된 「국회기록물 열람 지침」을 바탕으로 대국민 ‘기록물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¹¹⁾ 이는 국내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중 최초로 정책적으로 정보공개를 벗어난 별도의 열람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4. 맺음말

국회의 기록관리가 공공기록물법의 제정과 함께 시작되고 오늘날까지 2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갔다. 그 사이 국회기록보존소는 그 소속이 변경되고 위상도 국 단위로 승격되었으며, 위원회의 설립 근거 역시 「국회기록물관리규정」에서 상위 법규인 「국회기록물관리규칙」으로 격상되었다. 국회기록관리 주요 정책은 위원회의 안건으로 다루어진 뒤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실무적으로 추진되기에, 위원회 안건을 통한 정책 확인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의 안건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위원회의 구성 및 변화, 안건 현황을 확인하여 실제 위원회의 운영 행태를 파악하였다. 이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기획, 수집·보존, 서비스 영역을 기준으로 업무 세부 사항과 위원회의 각 안건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국회기록관리위원회는 설립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국회 내부 중심의 위원회로 지속되고 있다. 주요한 정책 사안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다양한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즉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그들과 함께 정책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의 위원회는 「국회기록물관리규칙」상 한정된 정원으로 인해 소속기관 기획부서의 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부 중심의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외부위원을 주축으로 거버넌스 형태를 지향하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국회의 위원회가 거버넌스적인 측면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의 역할에 ‘주요업무의 기본계획’이 심의 사항으로 명시되었지만, 국회기록관리의 주요 정책이 보고안건으로 상정되면서 정책과 관련한 다양하고 깊은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하나의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정책 사안을 담고 있는 심의안건은 2013년까지만 존재했고, 나머지 대부분의 정책 사안은 보고안건으로 다루어졌다. 법·제도 정비, 회의록 관리 방안, 기록관리 현황평가, 국회의원·정당의 의정활동 기록물 수집, 중요 국회기록물의 관리 방안, 정리·기술, 기록정보콘텐츠 구축 등 다양한 정책적 논의와 함께 의결되어야 하는 사항들도 모두 ‘주요업무 추진 계획(안)’과 같은 보고안건이다.

지난 10년간 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심의안건은 주로 기록관리 지도·점검 혹은 기록물의 비공개 기간연장 관련 사항이 대부분이었다. 현황평가 관련 사항과 같이 주로 심의안건으로서 논의되던 사항도 2018년도부터 보고안건

11) 다만, 2020년부터 본격화된 COVID-19 확산으로 실제 이용 실적은 없는 상황이다.

으로 다루어져, 결과적으로 최근 3년간의 심의안건은 오직 기록물의 비공개 기간연장에 관한 건뿐이다. 사실 이러한 비공개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도 국회기록물공개심의회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된 후 의결되는 것이기에, 결과적으로 위원회에서 다루는 국회의 기록관리 주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전혀 심의하지 않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즉, 현재의 위원회는 형식상 심의기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회기록보존소의 자문기구 역할만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안건을 살펴본 결과 특정 부문에 치중되지 않고, 기록관리 지도·점검, 기록물 수집·관리, 구술기록 채록, 역사기록 수집, 평가·보존, 공개 재분류, 정리·기술, 기록정보콘텐츠 등 전반적인 국회기록관리 정책이 다년간 연속성을 가지고서 추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회의원 기록관리 법률안 등 법·제도 정비 부분과 같이 일부 사안의 경우 여전히 미진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국회의원 기록물은 여전히 공식적인 국회기록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기록물은 법적인 이관 형태가 아니라 수집의 형태로서 국회기록보존소에 입수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국회기록물관리규칙」 개정,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 수집·관리 내규」 제정 등 관련 법규정에 대한 제정·개정 작업을 다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지만, 이 역시 현재까지 눈에 띄는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확인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 가장 기초적인 해결 방안은 위원회 개최 준비 단계부터 보고사항과 심의 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해 위원들로부터 주요 현안(국회 비공개회의록 및 불개재 부분 관련 사항, 각종 국회 내부의 법규 제정·개정, 의정활동 기록물에 대한 수집·관리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주요 정책 사안을 보고안건으로 계속 다루게 된다면, 위원회의 자문 역할만이 강화될 뿐이다. 차후 국회기록보존소는 위원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안건의 내용을 토대로 심의 또는 보고 사항을 구분해,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안건 유형이 통합되는 등 또 다른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향후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개정하면서 위원회 관련 조항을 전면 개정해 위원회 기능 및 운영 관련 사항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위원회 정원을 확대하여 정치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해, 각 정책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의견이 위원회에서 제시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회 운영에 관해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국회운영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 등을 내부위원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국회 내부의 기속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국회기록관리 법규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국회의장단 및 국회의원 등의 의정활동 기록물에 관한 사항’, ‘임시의정원 기록물 등 역사기록물에 관한 사항’과 같이 심의해야 할 기능을 위원회 관련 조항에 추가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연구는 국회기록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분석하고 해당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검토해 국회기록관리 정책을 검토하였다. 위원회의 안건을 통해 국회기록관리 정책이 어떻게 논의되었고 실행되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기에 정책 사안별로 세부적인 비판적 평가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국회기록관리위원회 관련 정보를 소개하고, 국회의 전반적인 기록관리가 어떻게 논의되고 실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이상으로 확인한 각각의 사안들은 향후 국회기록보존소의 주요 업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후속 연구들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국회기록관리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더불어 다양한 연구들이 많이 시행되길 희망한다.

참고문헌

- 국회기록보존소 기록정책과 (2019a). 2019년도 국회기록관리 교육과정 운영 계획(안), 『기록관리교육철』 [내부문서].
국회기록보존소 기록정책과 (2019b).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사업 결과 보고, 『임시의정원행사관계철』 [내부문서].

-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1a). 2011년도 국회기록관리위원회 회의록, 『국회기록관리위원회철』 [내부문서].
-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1b). 2011년도 국회기록관리위원회 회의자료, 『국회기록관리위원회철』 [내부문서].
-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2a). 2012년도 국회기록관리위원회 회의록, 『국회기록관리위원회철』 [내부문서].
-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2b). 2012년도 국회기록관리위원회 회의자료, 『국회기록관리위원회철』 [내부문서].
-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3a). 2013년도 국회기록관리위원회 회의록, 『국회기록관리위원회철』 [내부문서].
-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3b). 2013년도 국회기록관리위원회 회의자료, 『국회기록관리위원회철』 [내부문서].
-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4a). 2014년도 국회기록관리위원회 회의록, 『국회기록관리위원회철』 [내부문서].
-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4b). 2014년도 국회기록관리위원회 회의자료, 『국회기록관리위원회철』 [내부문서].
-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5a). 2015년도 국회기록관리위원회 회의록, 『국회기록관리위원회철』 [내부문서].
-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5b). 2015년도 국회기록관리위원회 회의자료, 『국회기록관리위원회철』 [내부문서].
-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5c). 국회도서관 63주년 개관 기념 기획전시 「의회지도자 해공 신익희 선생, 국회도서관 기록으로 만나다」. 출처: <http://archives.nanet.go.kr/cyberExhibition/playingCyberExh.do>
-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6a). 2016년도 국회기록관리위원회 회의록, 『국회기록관리위원회철』 [내부문서].
-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6b). 2016년도 국회기록관리위원회 회의자료, 『국회기록관리위원회철』 [내부문서].
-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7a). 2017년도 국회기록관리위원회 회의록, 『국회기록관리위원회철』 [내부문서].
-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7b). 2017년도 국회기록관리위원회 회의자료, 『국회기록관리위원회철』 [내부문서].
-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8a). 2018년도 국회기록관리위원회 회의록, 『국회기록관리위원회철』 [내부문서].
-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8b). 2018년도 국회기록관리위원회 회의자료, 『국회기록관리위원회철』 [내부문서].
-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9a). 2019년도 국회기록관리위원회 회의록, 『국회기록관리위원회철』 [내부문서].
-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19b). 2019년도 국회기록관리위원회 회의자료, 『국회기록관리위원회철』 [내부문서].
-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20a). 2020년도 국회기록관리위원회 회의록, 『국회기록관리위원회철』 [내부문서].
-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20b). 2020년도 국회기록관리위원회 회의자료, 『국회기록관리위원회철』 [내부문서].
-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20c). 2020년도 국회의장단 및 주요인사 구술채록 사업 완료보고서. 서울: 국회도서관.
- 김유승 (2011). 국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연구.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95-119. <https://doi.org/10.14404/JKSARM.2011.11.2.095>
- 김유승, 김장환 (2013). 국회기록보존소 직제 및 직무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1), 81-106. <https://doi.org/10.14404/JKSARM.2013.13.1.081>
- 김장환 (2013). 국회 비공개회의록 및 불개제 부분의 공표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35), 93-132. <https://doi.org/10.20923/kjas.2013.35.093>
- 김장환 (2015). 국회 기록화 전략 모형 수립 연구. 기록학연구, (46), 189-231. <https://doi.org/10.20923/kjas.2015.46.189>
- 김장환 (2016). 국회기록관리 현황과 당면 과제. 2016년도 국회기록관리연구회·한국기록전문가협회 공동 세미나 자료집.
- 김장환 (2018). 국회의원 기록관리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55), 39-71. <https://doi.org/10.20923/kjas.2018.55.039>
- 김장환, 이은별 (2015). 국회기록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2), 103-136. <https://doi.org/10.14404/JKSARM.2015.15.2.103>
- 성면섭, 이해영 (2020). 기록관리기관 이용 학술연구자의 정보이용행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3), 119-138. <https://doi.org/10.14404/JKSARM.2020.20.3.119>
- 이승일 (2008). 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국회기록관리체제의 개편(1999~2008). 기록학연구, (18), 37-89. <https://doi.org/10.20923/kjas.2008.18.037>
- 최혜영, 이승일 (2019). 국회기록물 관리 체제 개선 방안 연구.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3), 97-121. <https://doi.org/10.14404/JKSARM.2019.19.3.097>
- 홍연주 (2019). 기록물 서비스 아키비스트가 설계하는 임시의정원 기록정보콘텐츠 2019년도 제11회 전국기록인대회 포스터 발표, 부산대학교, 부산.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rchives management Se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2019a). 2019 National Assembly Archives Management Curriculum Operation Plan (Draft), 『File of Archives Management Curriculum』 [Internal documents].
- Archives management Se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2019b). Report the results of the project to celebrate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opening of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File of event of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Internal documents].
- Choi, Hye-Young & Lee, Seung-Il (2019).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the National Assembly Records Management System: Parliament Activity Record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9(3), 97-121. <https://doi.org/10.14404/JKSARM.2019.19.3.097>
- Hong, Yeon-Ju (2019). Archival service: Archival contents about the Korean Provisional Congress designed by Archivist. Announcement of the poster for the 11th National Archivist Congress in 2019, B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 Kim, Jang-Hwan & Lee, Eun-Byol (201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and Records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5(2), 103-136. <https://doi.org/10.14404/JKSARM.2015.15.2.103>
- Kim, Jang-Hwan (2013). A Study on a Plan to Make Public of the Closed Minutes and the Non-published Minutes at the National Assembly of R.O.K.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5, 93-132. <https://doi.org/10.20923/kjas.2013.35.093>
- Kim, Jang-Hwan (2015). A Study on Establishing a Documentation Strategy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6, 189-231. <https://doi.org/10.20923/kjas.2015.46.189>
- Kim, Jang-Hwan (2016). National Assembly Archive Management Status and Current Tasks. 2016 National Assembly Archive Management Research Group & Korean 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Joint Seminar book.
- Kim, Jang-Hwan (2018). A Study on the Records Management for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55, 39-71. <https://doi.org/10.20923/kjas.2018.55.039>
- Kim, You-Seung & Kim, Jang-Hwan (2013). A Study on Job and Organiz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3(1), 81-106. <https://doi.org/10.14404/JKSARM.2013.13.1.081>
- Kim, You-Seung (2011). ㉔A Study on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focused on the National Assembly Records Management Regul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1(2), 95-119. <https://doi.org/10.14404/JKSARM.2011.11.2.095>
- Lee, Seung-Il (2008). The Enactment of Record Management Act and the Reform of the National Assembly Record Management System(1999~2008).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18, 37-89. <https://doi.org/10.20923/kjas.2008.18.037>
- National Assembly Archives (2011a). 2011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mmittee of Korea Minutes, 『File of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mmittee of Korea』 [Internal documents].
- National Assembly Archives (2011b). 2011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mmittee of Korea Meeting data, 『File of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mmittee of Korea』 [Internal documents].
- National Assembly Archives (2012a). 2012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mmittee of Korea Minutes, 『File of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mmittee of Korea』 [Internal documents].
- National Assembly Archives (2012b). 2012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mmittee of Korea Meeting data, 『File of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mmittee of Korea』 [Internal documents].
- National Assembly Archives (2013a). 2013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mmittee of Korea Minutes, 『File of National

- Assembly Archives Committee of Korea.」 [Internal documents].
- National Assembly Archives (2013b). 2013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mmittee of Korea Meeting data, 『File of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mmittee of Korea.』 [Internal documents].
- National Assembly Archives (2014a). 2014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mmittee of Korea Minutes, 『File of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mmittee of Korea.』 [Internal documents].
- National Assembly Archives (2014b). 2014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mmittee of Korea Meeting data, 『File of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mmittee of Korea.』 [Internal documents].
- National Assembly Archives (2015a). 2015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mmittee of Korea Minutes, 『File of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mmittee of Korea.』 [Internal documents].
- National Assembly Archives (2015b). 2015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mmittee of Korea Meeting data, 『File of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mmittee of Korea.』 [Internal documents].
- National Assembly Archives (2015c). A special exhibition to celebrate the 63rd anniversary of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Parliamentary leader Haegong Shin Ik-hee meets through archives from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Available: <http://archives.nanet.go.kr/cyberExhibition/playingCyberExh.do>
- National Assembly Archives (2016a). 2016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mmittee of Korea Minutes, 『File of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mmittee of Korea.』 [Internal documents].
- National Assembly Archives (2016b). 2016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mmittee of Korea Meeting data, 『File of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mmittee of Korea.』 [Internal documents].
- National Assembly Archives (2017a). 2017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mmittee of Korea Minutes, 『File of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mmittee of Korea.』 [Internal documents].
- National Assembly Archives (2017b). 2017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mmittee of Korea Meeting data, 『File of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mmittee of Korea.』 [Internal documents].
- National Assembly Archives (2018a). 2018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mmittee of Korea Minutes, 『File of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mmittee of Korea.』 [Internal documents].
- National Assembly Archives (2018b). 2018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mmittee of Korea Meeting data, 『File of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mmittee of Korea.』 [Internal documents].
- National Assembly Archives (2019a). 2019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mmittee of Korea Minutes, 『File of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mmittee of Korea.』 [Internal documents].
- National Assembly Archives (2019b). 2019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mmittee of Korea Meeting data, 『File of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mmittee of Korea.』 [Internal documents].
- National Assembly Archives (2020a). 2020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mmittee of Korea Minutes, 『File of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mmittee of Korea.』 [Internal documents].
- National Assembly Archives (2020b). 2020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mmittee of Korea Meeting data, 『File of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mmittee of Korea.』 [Internal documents].
- National Assembly Archives (2020c). Completion Report of 2020 National Assembly Speakers and Key Personnel's Oral Recording Project. Seoul: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 Seong, Myeon-Seob & Rieh, Hae-Young (2020). A Study on the Information Use Behavior of Academic Researchers Using Archival Institution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0(3), 119-138.
<https://doi.org/10.14404/JKSARM.2020.20.3.119>

